결산검사

감 사 보 고 서

-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관련 위법·부당 사항)

2020. 12.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공공기관 결산 현황 ····· 3

Ⅲ. 감사결과 ····· 6

1. 감사결과 총괄 ····· 6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7

(1)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회계 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 부적정(주의・통보) ····· 8

(2) 2019회계연도 한국석유공사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부적정 [주의・통보·통보(시정완료)] ····· 16

(3) 유전개발 사업 및 석유비축 사업 출자금 평가 부적정(주의) ····· 28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공기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서 등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

2.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기관 및 절차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기관은 [표 1]과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인 한국조폐공사 등 22개 공공기관과 「한국전력공사법」 제19조 제1항 및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등 총 23개 공공기관이다.

[표 1]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기관 현황

구 분	대상기관
공 기 업 (17개)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정부기관 (6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기관 중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포함)와 그 부속서류 등 결산서 등을 [표 2]와 같이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하고 3월 말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며,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부처의 장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3항에 따라 5월 10일까지 공공기관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은 공공기관 결산서 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감사원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공공기관 결산서 등을 매년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표 2] 공공기관 결산검사 절차

공공기관		기획재정부 등		감사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결산서 등 작성 및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제출	➡	공공기관 결산서 등 감사원 제출	➡	결산검사서 기획재정부 제출	➡	공공기관 결산서 (감사원 검사 결과 첨부) 국회 제출
2월 말		5. 10.		7. 31.		8. 20.

3.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 처리

2020. 6. 8.부터 같은 해 7. 3.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23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는 2020. 7. 24.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같은 해 7. 30. 기획재정부에 제출[1]하였으며, 결산검사기간 중 확인된 결산 관련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질문·답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감사원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2020. 12. 23.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1)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는 2020. 10. 7.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

Ⅱ. 공공기관 결산 현황[2]

1. 공공기관 지정 현황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부의 투자·출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019년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은 [표 3]과 같이 총 339개가 지정되었는데 이 중 공기업은 36개 기관, 준정부기관은 93개 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210개 기관이다.

[표 3]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기관 수)	내 용
공기업(36개)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16개)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준시장형(20개)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93개)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14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79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21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2. 공공기관 재무 상태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3]으로 구분하여 재무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9회계연도 말 36개 공기업의 자산규모는 601.2조 원으로 전년도 말 580.0조 원보다 21.2조 원 증가(3.6%)하였고, 89개 준정부기관의 자산규모는 246.5조 원으로 전년도 말 238.3조 원보다 8.2조 원 증가(3.4%)하였다.

2)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은 아님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 중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은 공공기관 결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무 상태, 손익 현황 등 분석은 공기업 및 신용보증기금 등 4개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서술함

2019회계연도 말 36개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388.4조 원으로 전년도 말 371.4조 원보다 17.0조 원 증가(4.6%)하였다. 공기업 유형별 부채규모를 보면, 16개 시장형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196.2조 원으로 전년도 말 179.5조 원 대비 16.7조 원 증가(9.3%)한 반면, 20개 준시장형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192.2조 원으로 전년도 말 191.9조 원 대비 0.3조 원 증가(0.2%)하여 시장형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준시장형 공기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89개 준정부기관의 부채규모는 208.3조 원으로 전년도 말 198.7조 원보다 9.6조 원 증가(4.8%)하였다.

그 결과 2019회계연도 말 36개 공기업의 순자산 규모는 [표 4]와 같이 212.8조 원으로 전년도 말 208.6조 원보다 4.2조 원 증가(2.0%)하였고, 89개 준정부기관의 순자산 규모는 38.2조 원으로 전년도 말 39.6조 원보다 1.4조 원 감소(3.4%)하였다.

[표 4] 2019회계연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자산·부채·순자산 현황

(단위: 조 원, %)

구 분	2018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증감		
	자산 (C)	부채 (D)	순자산 (C-D)	자산 (E)	부채 (F)	순자산 (E-F)	자산 (G=E-C)	부채 (H=F-D)	순자산 (G-H)
공기업 전체(A)	580.0	371.4	208.6	601.2	388.4	212.8	21.2	17.0	4.2
시장형	279.9	179.5	100.4	296.3	196.2	100.1	16.4	16.7	-0.3
준시장형	300.1	191.9	108.2	304.9	192.2	112.7	4.8	0.3	4.5
준정부기관 전체(B)	238.3	198.7	39.6	246.5	208.3	38.2	8.2	9.6	-1.4
기금관리형	148.5	140.5	8.0	158.0	148.0	10.0	9.5	7.5	2.0
위탁집행형	89.8	58.2	31.6	88.5	60.3	28.2	-1.3	2.1	-3.4
합계(A+B)	818.3	570.1	248.2	847.7	596.7	251.0	29.4	26.6	2.8

주) 표의 합계에는 단수차이 있을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2019회계연도 말 36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표 5]와 같이 182.6%로 전년도 말 178.0%에 비해 4.6%p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89개 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도 545.5%로 전년도 말 502.8%에 비해 42.7%p 증가하였다.

[표 5] 2019회계연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부채비율 현황

(단위: 조 원, %, %p)

구 분	2018년 부채비율 (A)	2019년			부채비율 증감(D-A)
		부채규모(B)	순자산 규모(C)	부채비율(D=A/B)	
공기업 전체	178.0	388.4	212.8	182.6	4.6
시장형	178.7	196.2	100.1	196.1	17.4
준시장형	177.3	192.2	112.7	170.6	-6.7
준정부기관 전체	502.8	208.3	38.2	545.5	42.7
기금관리형	1758.7	148.0	10.0	1476.0	-282.7
위탁집행형	184.7	60.3	28.2	214.3	29.6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29.7	596.7	251.0	237.8	8.1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3. 공공기관 손익 현황

2019회계연도 36개 공기업의 수익은 150.2조 원으로 전년보다 0.1조 원 증가(0.1%)하였고, 89개 준정부기관의 수익은 165.9조 원으로 전년보다 15.8조 원 증가하였다. 공기업의 비용은 148.7조 원으로 전년보다 0.7조 원 증가(0.1%)하였고, 준정부기관의 비용은 166.9조 원으로 전년보다 15.4조 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9회계연도 36개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5조 원으로 전년도보다 0.6조 원 감소(28.6%)하였고, 89개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손실은 1.0조 원으로 전년도보다 0.4조 원 감소하였다.

[표 6] 2019회계연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수익·비용·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조 원)

구 분	2018			2019			증감		
	수익 (C)	비용 (D)	순이익 (D-C)	수익 (E)	비용 (F)	순이익 (F-E)	수익 (G=E-C)	비용 (H=F-D)	순이익 (G-H)
공기업 전체(A)	150.1	148.0	2.1	150.2	148.7	1.5	0.1	0.7	-0.6
시장형	101.5	102.6	-1.1	98.7	100.2	-1.5	-2.8	-2.4	-0.4
준시장형	48.6	45.4	3.2	51.5	48.5	3.0	2.9	3.1	-0.2
준정부기관 전체(B)	150.1	151.5	-1.4	165.9	166.9	-1.0	15.8	15.4	0.4
기금관리형	36.6	34.4	2.2	39.3	37.1	2.2	2.7	2.7	0.0
위탁집행형	113.5	117.1	-3.6	126.6	129.8	-3.2	13.1	12.7	0.4
합계(A+B)	300.2	299.5	0.7	316.1	315.6	0.5	15.9	16.1	-0.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원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결산서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수행하면서 [표 7]과 같이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검사 관련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요구와 통보를 하였다.

[표 7]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합 계	주 의	시 정	통 보	통 보(시정완료)
6	3	-	2	1

검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 등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자재 등 재고자산 물량명세서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회계감사인의 감사절차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공사원가를 부적정하게 산정하는 등 내부회계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 업무 불철저(통보·주의)

② 한국석유공사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실현가능성이 낮은데도 이연법인세 자산을 과대계상하였고 위 공사의 외부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결산서 상 재무상태와 손익이 왜곡 표시[통보(시정완료)·통보·주의]

이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재고자산 물량명세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내부회계 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그리고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결산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한국석유공사의 외부회계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에 대한 심리를 실시한 후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다.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명세: 별첨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회계 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조 치 기 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7호) 제2조 등에 따라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1. LH공사의 재고자산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 미흡

LH공사는 2019회계연도 말 현재 [표 1]과 같이 전체 자산 176조 5,151억 원 중 67조 1,295억 원(전체 자산 대비 38%)의 재고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표 1] LH공사의 2019회계연도 자산 현황

(단위: 억 원, %)

합계 (비율)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재고자산(전체 자산 대비)	
1,765,151 (100)	755,305 (42.8)	**671,295** **(38.0)**	1,009,846 (57.2)

자료: 2019회계연도 LH공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재구성

「회계감사기준서」(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및 금융위원회 승인, 이하 같다) 501(증거서류) 문단 A1에 따르면 문단 4(a)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재고자산 실사 입회[1]와 관련하여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계속기록법[2]에 따른 재고관리

1) 회계감사인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가 수립한 재고자산 실사 절차에 입회하여 실사절차를 관찰하고 재고자산에 대한 조사 및 테스트 실사를 수행하여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이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년에 최소 1회는 재고자산을 실사하는 절차[3]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LH공사는 재고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고자산 실사 절차를 수립하고 있지 않았고,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고자산 물량명세서 및 재고자산 수불부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받았는데 사업지구별로 물량명세서를 관리하고 있으나 LH공사 회계팀에서 전체 물량명세서를 취합하는 데 시간적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회계법인에서 2019회계연도 LH공사에 대한 회계감사 시 재고자산의 실재성에 대한 검사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2. 소모성 부대비의 공사원가 과다 인정 및 재무제표 작성 부적정

LH공사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53조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비축토지 및 기업토지 등의 취득원가는 순매입비와 취득을 위하여 발생한 모든 부대비를 합산하며, 취득 후 가치를 증가시키는 추가적 지출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결산검사기간(2020. 6. 8.~7. 3.) 중 2019회계연도 LH공사의 분개장[4]을 제출받아 소모성 부대비가 재고자산 금액산정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한[5] 결과, [표 2]와 같이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판매관리비로 분류되어야 할 포상비용, 행사비용, 출장비용,

---

2)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 상황을 계속적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된 내용에 따라 일정 시점의 재고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3) 경영진이 재고자산 실사 계획을 주기적(주로 분 반기 또는 1년 단위)으로 수립·실행하여 실제 재고자산 수량과 회계시스템(회계명세서)에 저장된 수량과 비교한 후 발견된 차이에 대해 회계시스템(회계명세서)을 스스로 정정하는 절차
4) 모든 거래내용을 분리해서 발생순으로 기록하는 장부
5) 소모성 부대비용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총 215,308건으로 물리적 한계상 전수조사를 통한 과대 계상분을 산출할 수 없어 포상, 행사 등의 검색어로 표본을 추출한 후 그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교육비용, 홍보비용 등 8.1억 원(3,141건)이 취득원가에 부당하게 가산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금액만큼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되었다.

[표 2] 공사원가 중 소모성부대비 과다 인정 내역

(단위: 건, 원)

구분	지출 내용	건수	금 액
1	포상비용	73	432,887,000
2	행사비용(체육행사, 노사, 사회공헌 등)	1,176	192,388,914
3	출장비용(시무식, 퇴임식, 국토교통부 방문 등)	1,129	85,341,760
4	교육 참석비(청렴교육, 폭력예방교육 등)	722	52,548,650
5	홍보비용(기념품 구입 등)	14	42,889,587
6	기타 비용(일반책자 구입 등)	27	5,535,386
합계		3,141	811,591,297

자료: LH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3. 국고보조예금 및 원화장기차입금 등 회계관리 부적정

LH공사는 2019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실제 예금 잔액 등을 파악한 후 회계장부상의 금액과 차이가 없도록 정부보조금 잔액 등을 관리하여야 하고 회계감사인에게 이와 같이 관리되고 있는 회계장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이 2018회계연도 회계감사 시 LH공사의 회계장부상 정부보조금 잔액과 실제 예금 잔액의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외부 조회서를 확인한 결과, [표 3]과 같이 회계 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은 정부출연금예금 잔액과 정부보조금 잔액이 21.4억 원 차이 나는 등 재무제표상 왜곡표시가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회계법인에 해당 차이의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수정할 것을 약속하고 회계감사인은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정과목에 대한 감사절차를 종결하였다.

그런데 2019회계연도에도 ○○회계법인이 회계장부상 정부보조금 잔액과 실제 국고보조예금 잔액의 일치성을 확인한 결과, [표 3]과 같이 회계 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은 정부출연금예금 잔액과 정부보조금 잔액이 2.2억 원 차이 나는 등 여전히 정부출연금예금 잔액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3] 금융기관 조회서 대사 결과

(단위: 원)

구분	국고보조예금 조회 잔액		회계장부상 정부보조금		차이(A-B)
	계정과목	금액(A)	계정과목	금액(B)	
2019회계연도	정부출연금예금	1,433,366,232	정부보조금 (연구)	1,208,260,354	225,105,878
2018회계연도	정부출연금예금	3,830,266,901	정부보조금 (연구)	1,686,449,821	2,143,817,080

자료: ○○회계법인 자료 재구성

그리고 ○○회계법인이 LH공사의 2019회계연도 회계장부상 원화장기차입금 34조 1,811억 원과 은행연합회 여신 현황 등의 일치성을 확인한 결과, 은행연합회 여신 현황 자료[6] 및 금융기관조회서와 결산 오류[7] 등의 사유로 [표 4]와 같이 각각 7.84억 원, 12.7억 원 차이가 나는 등 원화차입금 잔액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4] 2019년 은행연합회 여신 현황 자료 등 대사 결과

(단위: 백만 원)

계정과목	회계상 장부금액(A)	은행연합회 여신 현황 등		금융기관 조회 결과 등	
		조회(B)	차이(A-B)	조회(C)	차이(A-C)
원화차입금 (기금, 기타)	34,181,066	34,180,282	784	34,179,792	1,273

자료: ○○회계법인 제출자료 재구성

6) 은행연합회 여신 현황 자료는 '백만 원' 단위로 조회됨

7) 재무제표상 이자비용 과다 계상, 차입금 과소 계상 오류이고 이에 대해 LH공사는 은행별 대출 건수가 수천 건에 달하여 현실적으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히 식별하기는 실무상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답변

4. 종업원 대여금 관련 회계명세서 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 부적정

LH공사는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직원의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8]하고 있고, 재무제표상 종업원 대여금(대학생 학자금) 계정에 대여금 합계 37,595,110,089원이 있는 것으로 작성하였다.

가. 종업원 대여금 관련 회계명세서 관리 부적정

LH공사는 2009. 10. 1. 구 대한주택공사와 구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하여 LH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통합 이전 구 대한주택공사 학자금과 통합 이후 LH공사 학자금으로 구분하여 종업원 대여금을 관리하고 있다.

LH공사가 작성하여 ○○회계법인에 제공한 종업원 대여금 관련 회계명세서에 따르면 [표 5]와 같이 2019회계연도 말 현재 대여금은 합계 37,595,110,089원이다.

[표 5] 2019회계연도 회계명세서상의 종업원 대여금 관리 현황

(단위: 원)

구분	합계	대여금	부(-)의 대여금
대여금액	37,595,110,089	40,961,534,712	(3,366,424,623)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2009년 공사 통합 당시 일부 직원의 경우 회계명세서상 종업원별 잔액이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수금액만 종업원별로 처리함에 따라 부(-)의 대여금[9]으로 3,366,424,623원이 관리되고 있어 회계장부상 종업원별 대여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감사원 결산검사기간 중 LH공사에서 구축한 종업원 대여금 내

8) 종업원 대여금은 시장이자율로 대여하고 매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상환
9) 위 오류는 2009년 통합 당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감사 기간 중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위 공사는 추후 오류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

부관리 전산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표 6]과 같이 2019회계연도 말 대여금은 합계 37,608,504,194원으로 위 회계명세서상 합계 금액 37,595,110,089원과 비교하면 13,394,105원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여자별로 비교해보면 회계상 장부금액과 실제 관리명세금액 간의 오류금액이 12,706,543,425원으로 확인되었다.

[표 6] 2019회계연도 내부 전산시스템상의 종업원 대여금 관리 현황

(단위 : 원)

구분	합계	구 대한주택공사 학자금	LH공사 학자금
대여금액	37,608,504,194	17,920,948,951	19,687,555,243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종업원 대여금의 증빙서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자금 대여가 집행된 1,762명 중 107명을 표본으로 정하여 학자금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증빙을 확인한 결과, 107명 중 46명(43.0%)에 대해서만 관련 증빙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61명(57.0%)에 대해서는 일부 증빙만 확인하거나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종업원 대여금의 증빙서류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나. 종업원 대여금 관련 재무제표 작성 부적정

한편 LH공사에서 위 “가항”과 같이 종업원 대여금을 관리하면서 구 대한주택공사 학자금 상환 주체에 대한 논란[10]이 있어 2014년 12월 구 대한주택공사 학자금 상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송[11]을 제기하였고, 2019. 11. 15. 대법원 판결로 종업원 학자금 대여금 37,608,508,294원 중 10.4%인 3,921,814,750원이

10) 2009. 10. 1. LH공사로 통합되기 이전에 대한주택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학자금을 대신 상환하기로 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일부 상환하였으나 공익제보로 2014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융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은 직원과 위 기금이 연대하여 상환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됨

11) 1999년 1월 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예산 무상지원 폐지 방침에 따른 구 대한주택공사 학자금 대여금 상환 주체 확인을 위한 소송으로 1심(2017. 7. 11.)에서는 위 기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직원이 연대하여 상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기금에 상환 책임이 있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직원은 채무에서 면책된다고 판결하였고 대법원(2019. 11. 15.)에서 상고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됨

2014년 12월 소송 제기 당시 채권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됨에 따라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위 회수불가능액 3,921,814,750원은 제외되어야 했다.

그런데도 LH공사에서는 위 회수불가능액을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무제표상 종업원 대여금이 3,921,814,750원만큼 과대계상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LH공사는 지적된 회계 오류를 2020회계연도에 수정하여 반영하고, 재고자산 물량명세서와 재고실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회계감사 시 회계감사인이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종업원 대여금과 관련한 학자금 영수증 등 관련 증빙도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지적된 내용을 포함한 취약 분야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① 회계감사인이 재고 실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재고자산 실사 절차를 수립하고 물량명세서 등을 관리하여 향후 회계감사 시 재고자산의 실재성이 효과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공사원가에는 공사와 관련이 없는 소모성 부대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 외부 조회결과와 내부 회계명세서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며, 종업원

대여금 명세 등 회계명세서를 실질에 맞게 관리하는 등 내부회계 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통보(시정완료)

제 목	2019회계연도 한국석유공사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한국석유공사 ② 금융위원회
조 치 기 관	① 한국석유공사 ② 금융위원회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라 한다)는 2019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자회사인 다나 페트롤리움(Dana Petroleum Limited, 이하 “다나”라 한다)[1]로부터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미화 총 1,270,000,000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 기준)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 후 배당금수익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배당금수익과 상계할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290,541,368달러를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이연법인세자산 80,932,739달러(이월결손금 효과)를 계상하였다.

그리고 □□회계법인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2020. 1. 13.부터 같은 해 2. 28.까지 2019회계연도 석유공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2]를 실시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공인회계사법」제39조와 제48조에 따라 회계법인과 그

1) 지분: 석유공사 100% 소유, 소재지: 영국(런던), 취득일: 2011. 1. 28., 매장량: 130.4만 배럴, 자산(광구) 보유국: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이집트
2) □□회계법인은 2019. 6. 13. 석유공사와 2019~2021회계연도 회계감사 용역계약을 체결함

소속 공인회계사를 제재하는 등 회계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하고 있다.

이연(移延)법인세 회계처리 개요

- 이연법인세는 이월하여 연기한 법인세로, 재무회계상 산정한 법인세비용과 세무상 계산한 법인세 금액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회계상의 항목이고, 법인세비용과 법인세 납부액 간의 차이는 주로 재무회계와 세법상의 수익·비용인식 시점* 차이(예: 재산재평가이익 등)와 세법 정책(감가상각비 한도 등)에 따른 것이며 두 금액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수익·비용 등을 '일시적차이'라고 함

  * 재무회계의 경우 기본적으로 '발생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나 세무의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법인세법」 제40조 제1항)를 적용

- 당기 중 회계상 법인세비용이지만 법인세를 나중에 납부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고(관련 수익·비용 등을 '가산할 일시적차이'라고 함), 반대로 미리 납부한 경우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관련 수익·비용 등을 '차감할 일시적차이'라고 함)

2. 석유공사의 2019회계연도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이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12호(법인세) 문단 24, 27 및 28에 따르면 재무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이하 "일시적차이"라 한다)에 대한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 결정 시 차감할 일시적차이(미래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소멸)는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문단 35와 36에 따르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차감할 일시적차이에 해당)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되므로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석유공사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미래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후 유가 등 경영환경이 변동되어 미래 재무전망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래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석유공사는 2019년 8월 2019~2023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표 1]과 같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회사인 다나의 매출액,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 배당가능 현금발생액 및 배당액(석유공사의 배당수익)을 추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표 1] 다나의 2019~2023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단위: 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1,215,099,179	1,081,828,895	1,216,313,524	1,313,418,935	1,171,929,663
배당가능이익 (당기순이익)	217,455,582	193,717,560	205,094,944	281,559,292	236,354,372
배당가능 현금발생액	159,870,266	54,239,337	259,281,661	308,842,248	122,140,890
배당액	12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이후 석유공사는 2019. 12. 18. 2019회계연도 결산을 준비하면서 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후 유가 등 경영환경이 변동되었고, 자회사에 필요한 최소자금 이외에는 최대한 본사에 송금하도록 한 2019년 E&P[3] 글로벌 전략회의(2019. 11. 4.~11. 5. 개최)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미래 재무전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사와 자회사의 미래 예상 매출액과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을 다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표 2]와 같이 다나의 배당가능 현금발생액을 기업가치평가 모델[4]을 활용하여 추정한 후 다나의 배당계획 및 감자계획을 변경하였다.

[표 2]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위해 변경한 다나의 미래 재무전망

(단위: 달러)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	1,035,745,601	1,086,348,970	1,092,692,184	1,062,894,429	930,992,114
배당가능이익 (당기순이익)	278,903,282	103,983,296	92,312,984	172,356,874	64,074,057
배당가능 현금발생액	81,406,332	222,798,665	292,304,266	438,046,144	251,939,593
배당계획	80,000,000	50,000,000	50,000,000	-	500,000,000
감자 후 본사송금액	-	150,000,000	200,000,000	150,000,000	50,000,000

(단위: 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매출액	720,914,199	670,675,373	743,372,861	717,681,545	756,800,575
배당가능이익 (당기순이익)	50,693,732	82,757,745	112,126,213	129,047,790	167,098,789
배당가능 현금발생액	276,885,123	237,592,444	177,557,340	192,159,706	51,471,050
배당계획	200,000,000	100,000,000	50,000,000	100,000,000	140,000,000
감자 후 본사송금액	-	-	-	-	-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석유공사는 [표 3]과 같이 2024~2026년, 2029년에 다나로부터 배당 및 감자에 따라 지급받을 배당금수익에 대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3) 석유개발, 탐사와 생산(Exploration&Production)
4) 광구별 매장량을 기초로 한 사용가치에 합리적인 위험률을 적용한 발견잠재자원량을 가산하여 추정한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석유공사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290,541,368달러를 활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고,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 80,932,739달러를 인식하였다.

[표 3] 배당수익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 계상액

(단위: 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9년	합계
추정이익(A)	-284,327,808	-282,200,004	-289,040,314	-299,209,964	-1,154,778,090
자회사로부터 배당수익(B)	727,407,011	390,454,728	445,703,024	550,469,742	2,114,034,505
과세소득(C=A+B)	443,079,203	108,254,724	156,662,710	251,259,778	959,256,415
이월결손금 외 차감할 일시적차이(D)	214,305,908	1,153,545	8,377,781	178,031,174	401,868,408
각 사업연도 소득(E=C-D)	228,773,295	107,101,179	148,284,929	73,228,604	557,388,007
이월결손금 공제액 (F,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한도)	137,263,977	64,260,707	88,970,957	43,937,163	334,432,804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 계상액(F×24.2%)	33,217,882	15,551,091	21,530,972	10,632,794	80,932,739

주: 1.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소득-이월결손금 외 차감할 일시적차이
2. 한계 법인세율 24.2%가 반영된 금액임

자료: □□회계법인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 6. 8.~7. 3.) 중 석유공사가 미사용결손금을 사용하기 위해 앞서 [표 2]와 같이 추정한 다나의 배당가능이익과 배당가능 현금발생액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 상업성이 없는 자원량을 활용하여 다나의 배당가능 현금발생액 과대추정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석유자원량 설명자료인 “석유자원량 평가기준”에 따르면 [그림]과 같이 석유자원량을 생산량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매장량’은 시추에 의해 발견되고 기술적으로 회수가능하며 시장환경 및 사업측면에서 상업성이 있고 저류층에 잔존하는 석유이다. 그리고 ‘발견잠재자원량’은 시추에 의해 석유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발견되었더라도 특정시점의 기술 및 경제적 관점에서 상업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림] 석유자원량 분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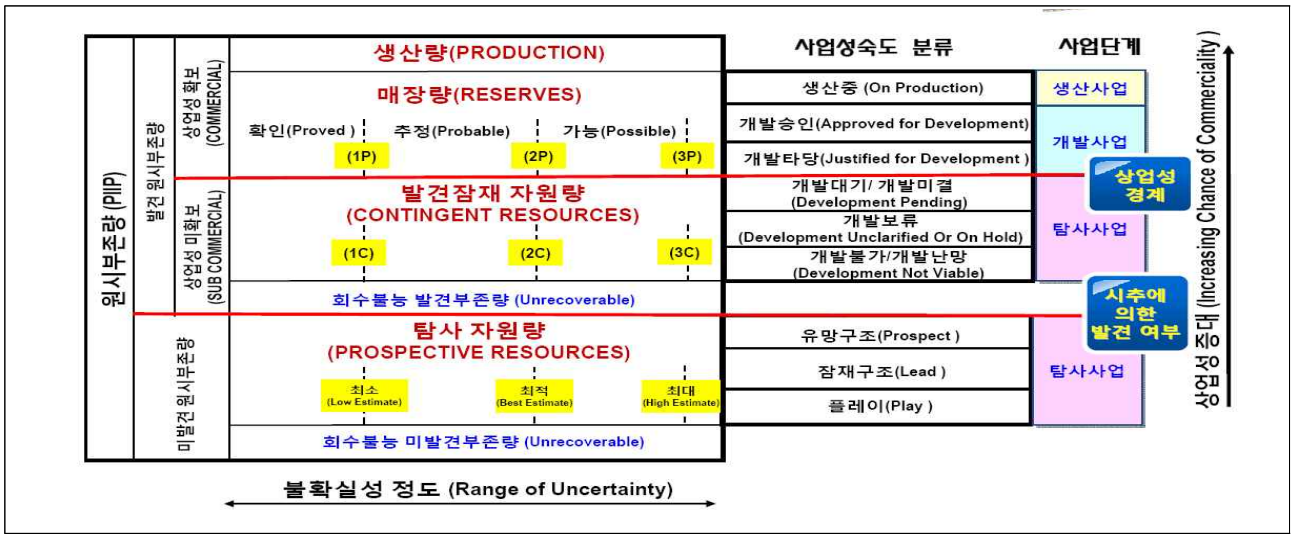

자료: 석유자원량 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석유공사는 다나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발견잠재자원량은 상업성이 확보된 광구의 매장량 대비 22.5%의 사용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공사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위한 미래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추정할 때에는 위 “석유자원량 평가기준”에 따라 상업성이 확보된 석유매장량을 기준으로 미래 판매량을 추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석유공사 ○본부 □처 △팀 담당자인 대리 A, 팀장 B는 이연법인세를 계상하기 위해 다나의 배당가능 현금발생액을 추정하면서 [표 4]와 같이 발견잠재자원량을 포함하는 등 상업성이 없어 미래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광구의 현금발생액 922,022,254달러를 포함하여 ▷본부 ◁처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본부 ◁처 팀장 C는 △팀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당가능 현금발생액 추정치의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결산목적으로 사용하여 미래 예상 판매량과 현금발생액을 과대추정하였다.

[표 4] 다나의 배당가능 현금발생액에 포함된 상업성이 없는 광구의 현금발생액

(단위: 달러)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석유공사 추정 배당가능 현금 발생액(A)	81,406,332	222,798,665	292,304,266	438,046,144	251,939,593	276,885,123
상업성이 없는 광구의 현금 발생액주)(B)	-85,118,188	-208,465,818	-60,489,869	168,709,684	118,083,056	164,304,952
상업성이 확인된 광구의 현금 발생액(A-B)	166,524,520	431,264,483	352,794,135	269,336,460	133,856,537	112,580,171

(단위: 달러)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이후 현금부족액	합계
석유공사 추정 배당가능 현금 발생액(A)	237,592,444	177,557,340	192,159,706	51,471,050	-440,117,195	1,782,043,468
상업성이 없는 광구의 현금 발생액주) (B)	187,151,489	144,999,256	121,136,242	91,807,538	279,903,912	922,022,254
상업성이 확인된 광구의 현금 발생액(A-B)	50,440,955	32,558,084	71,023,464	-40,336,488	-720,021,107	860,021,214

주: 상업성이 없는 광구의 추정 현금유입액과 유출액을 모두 제거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2) 실현가능성이 낮은 탐사광구권을 미래 과세소득으로 인식

석유공사는 2019회계연도 결산 목적으로 위 [표 2]와 같이 다나의 미래 배당가능이익을 추정하면서 2020. 1. 1.(계약일: 2019. 11. 11.) 다나가 △△에너지로부터 탐사권을 양도받은 탐사광구 복게(Bokje, 네덜란드 해상 광구)의 예상 판매량을 [표 5]와 같이 추정매출액에 넣고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였다.

[표 5] 다나의 미래 추정손익에 포함된 복게광구 매출 전망

(단위: 달러)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추정매출액(A)	670,675,373	743,372,861	717,681,545	756,800,575	2,888,530,354
복게광구 추정매출(B)	124,731,404	234,772,374	116,002,396	64,743,047	540,249,221
복게광구 제외시 추정매출액(A-B)	545,943,969	508,600,487	601,679,149	692,057,528	2,348,281,133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복게 광구는 △△에너지가 시추활동 등 탐사를 실시하지 않아 2011년 7월 탐사활동 중단이 선언된 광구이며, 다나는 해당 광구의 광구권을 획득한 후 2.5년 이내 시추 1공 및 5년 내 추가시추 1공을 계획하고 있는 등 해당 광구의 시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더욱이 2019년 말 현재 매장량 보고서 등에서 복게 광구에 대한 매장량조차 확인되지 않아 해당 광구로부터 발생할 미래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실정이었다.[5)]

그런데도 석유공사 ○본부 □처 △팀 담당자인 대리 A, 팀장 B는 복게광구의 추정매출액 540,249,221달러를 2026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다나의 추정매출액에 넣고 ▷본부 ◁처에 제출하였으며, ▷본부 ◁처 팀장 C는 이를 그대로 결산목적으로 사용하여 배당가능이익을 과대추정하였다.

3) 미래 과세소득 등의 과대인식에 따른 재무제표 영향

석유공사는 “1)~2)항”과 같이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발견잠재자원량 등에 대한 배당가능 현금발생액, 배당가능이익을 실현가능성이 높은 과세소득으로 추정함에 따라 [표 6]과 같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722,155,735달러의 배당수익을 과대추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59,892,897달러(69,343,996,147원)만큼 이연법인세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석유공사는 다나의 배당가능 현금발생액을 추정하면서 위 복게광구의 매출액을 제외하고 추정하여 배당가능이익과 배당가능 현금발생액의 불일치가 발생

[표 6] 배당가능이익 과대추정 현황

(단위: 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19년말 이연법인세자산(A)	85,079,912	15,830,249	23,558,395	-
배당가능이익 과대추정액	132,155,735	200,000,000	100,000,000	50,000,000
정당 이연법인세자산(B)	65,890,900	279,157	9,038,395	-
차이(B-A)	-19,189,012	-15,551,092	-14,520,000	-

(단위: 달러)

구분	2028년	2029년	기타 유보효과	합계
2019년말 이연법인세자산(A)	-	53,716,337	-56,606,316	121,578,577
배당가능이익 과대추정액	100,000,000	140,000,000	-	722,155,735
정당 이연법인세자산(B)	-	43,083,544	-56,606,316	61,685,680
차이(B-A)	-	-10,632,793	-	-59,892,897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원화로 환산[6]하면 [표 7]과 같이 석유공사의 2019회계연도 자산은 18조 7,311억 원에서 18조 6,618억 원으로, 자본은 6,002억 원에서 5,308억 원으로 감소하고 당기순손실은 849억 원에서 1,543억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회계오류 반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수정 전·후 비교 명세(2019회계연도)

(단위: 원, %)

구분	수정 전 재무제표	회계오류 반영금액		수정 후 재무제표
		증가	감소	
자산	18,731,146,830,825	-	69,343,996,147	18,661,802,834,678
부채	18,130,956,439,129	-	-	18,130,956,439,129
자본	600,190,391,696	-	69,343,996,147	530,846,395,549
부채비율	3,020.9	394.6	-	3,415.5
당기순이익(손실)	(84,937,816,881)	(69,343,996,147)	-	(154,281,813,028)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3. □□회계법인의 2019회계연도 석유공사에 대한 회계감사 부적정

회계감사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감사원에서 제정한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와 「공공감사기준」 제31조에서 정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

6) 미화로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의 원화환율(1,157.8원)로 환산하고,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원화 평균환율(1,165.6원)로 환산하며, 환산에서 생기는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 13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의 회계추정치에 대하여 도출방법과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를 테스트하거나 감사인이 추정치를 독립적으로 도출하는 절차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회계법인은 석유공사의 경영진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을 사용하기 위해 추정한 다나의 배당가능이익과 배당가능 현금발생액의 추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했다.

그런데 □□회계법인은 석유공사가 다나의 배당가능이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미래 예상매출액과 배당가능 현금발생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미래 예상매출액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였는데도 그 차이의 원인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7]을 활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였다고 회계감사조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또한, □□회계법인은 석유공사가 다나의 기업가치 평가시 적용한 주요 가정들을 적용하여 미래 과세소득을 추정하였음을 알고서도, 기업가치 평가시 실현가능성이 낮아 추정매장량의 22.5%만 미래 발생가능한 매장량으로 인정한 발견잠재자원량을 미래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할 때에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회계법인은 위 “2”항과 같이 석유공사가 2019회계연도 결산과정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법인세 회계처리 규정을 위배하여 이연법인세자

7) 석유공사는 결산목적으로 작성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예상매출액을 활용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였으나 배당가능 현금발생액을 추정할 때에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발견잠재자원량을 예상매출액에 추가하는 등 미래 예상매출액을 서로 다르게 적용

산 69,343,996,147원[8]을 과대계상하였는데도 2020. 3. 3. 위 공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표명하였다.[9]

관계기관 의견

① 석유공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발견잠재자원량을 미래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등 법인세 회계처리 규정을 위배하여 이연법인세자산 69,343,996,147원을 과대 계상한 2019회계연도 석유공사의 재무제표를 수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①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위 공사에서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였고 2020. 7. 28. 회계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는 등으로 조치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통보(시정완료)]**

②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재무상태와 손익이 왜곡되지 않도록 법인세 회계처리 등 결산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8) □□회계법인은 석유공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수행중요성기준(「회계감사기준」 제320 문단 11에 따라 감사인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고 추가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중요성 금액을 결정)을 30,400,000달러(354억여 원)로 설정

9) 이후 □□회계법인은 위 감사결과의 지적내용을 반영하여 2020. 7. 28. 회계감사보고서를 재발행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9회계연도 한국석유공사의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외부감사 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심리한 후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유전개발 사업 및 석유비축 사업 출자금 평가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조 치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내 용

1. 업무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1979. 3. 3. 한국석유공사를 설립하였으며, 2020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유전개발 사업 부문과 석유비축 사업 부문에 총 10조 4,928억 원[1]을 출자하였다.

[표 1]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석유공사 출자금 현황

유전개발 사업 부문	석유비축 사업 부문	총계
5조 2,190억 원	5조 2,738억 원	10조 4,928억 원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2019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결산보고서의 재정상태표에 한국석유공사 출자금[2]의 장부가액을 기존 출자가액인 10조 4,928억 원으로 평가하였다.

1) 산업통상자원부 출자금 10조 4,928억 원과 기획재정부 출자금 223억 원(석유비축 사업 부문)을 더하면 한국석유공사의 자본금은 10조 5,151억 원이 됨
2) 유가증권 상세 계정과목 : 투자자산-장기투자증권-지분증권-출자금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조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국가회계예규, 기획재정부) 문단 28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이금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3)]

그리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가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A13에 따르면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보고기간 말마다 회수가능액을 분석하여 손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손상차손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액[4)]과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회계연도와 2017회계연도에 각각 대한석탄공사(4,351억 원)와 한국광물자원공사(1조 8,557억 원)에 출자한 출자금에 대하여 완전자본잠식의 사유로 전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한 바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매 회계연도 결산 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출자금에 대하여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여 감액손실이 발

---

3) 감액한 금융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금융자산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금융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

4) 문단 6.A13에서 회수가능액은 유가증권 발행자의 순자산을 자산별로 시장가격, 공시지가 또는 감정금액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공정가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

생하는 경우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이번 감사원의 공공기관 결산검사기간(2020. 6. 8.~7. 3.)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출자금 감액손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한국석유공사의 2019회계연도 재무실적과 2020~2024회계년도의 중장기 재무전망을 기초로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한국석유공사의 2019회계연도 재무실적

한국석유공사의 2019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결산 결과 [표 2]와 같이 자산은 18조 7,311억 원, 부채는 18조 1,310억 원, 자본은 6,001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출액 2조 9,300억 원, 영업손익은 5,715억 원 및 당기손익은 -849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2] 한국석유공사의 2018~2019회계연도 재무 및 손익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8회계연도 결산(A)	2019회계연도 결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반영 후(B)	증감(B-A)
자산	182,390	187,311	186,618	4,228
부채	174,749	181,310	181,310	6,561
자본	7,641	6,001	5,308	-2,333
납입자본금(정부 출자금)	104,815	105,151	105,151	336
매출액	31,493	29,300	29,300	-2,193
영업손익	5,434	5,715	5,715	281
당기손익	-11,595	-849	-1,543	10,052
누적결손금	-92,015	-93,076	-93,770	-1,755
부채비율	2,287.1%	3,020.9%	3,415.5%	1,128.4%p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감사원에서 한국석유공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검사한 결과 법인세수익 693억 원과 이연법인세자산이 693억 원 과대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12호(법인세) 문단 24, 27 및 28에 따르면 재무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에 대한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 결정 시 차감할 일시적차이(미래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소멸)는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석유공사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때에는 미래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래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했다.

그런데 한국석유공사는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배당금수익 9,001억 원을 수령하여 기초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2,885억 원을 사용할 것으로 계획한 후 이연법인세자산 693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세수익 693억 원과 이연법인세자산 693억 원이 과대계상된 오류가 있었다.[5)]

그 결과 한국석유공사의 2019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표 2]와 같이 자산은 전년 대비 4,228억 원 증가한 18조 6,618억 원인 반면, 부채는 전년 대비 6,561억 원 증가한 18조 1,310억 원이었다.

그리고 매출액은 2조 9,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3억 원 감소하였으나 영업손익은 5,7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1억 원이 증가하였고 당기손익은 -1,5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2억 원만큼 감소하여 영업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의 누적 결손금이 전년 대비 1,755억 원 증가한 -9조

5) '2019회계연도 한국석유공사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부적정' 참조

3,770억 원에 이르고, 자본은 전년 대비 2,333억 원 감소한 5,308억 원으로 납입자본금(정부출자금)의 95%가 잠식되었으며 부채비율[6]은 3,415.5%로 전년 대비 1,128.4%p 높아져 재무건전성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한국석유공사의 중장기 재무전망(2020~2024년)

한국석유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6월 30일까지 제출하고 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경영목표, 사업계획과 투자방향, 재무전망, 부채관리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2020. 6. 25. 이사회 의결로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하면서 [표 3]과 같이 국제유가의 하락 전망과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개발 사업 관련 매각손실 등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이 2020년 -1조 2,710억 원에서 2024년 -844억 원으로 추정하여 5년간 누적손실만 3조 8,681억 원에 달하고, 자본은 2020년부터 -5,284억 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발생되어 2024년 -2조 6,405억 원에 이르는 등 재무상태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자산은 2020년 19조 2,857억 원에서 2024년 18조 5,915억 원으로 6,942억 원 감소하는 반면, 부채는 2020년 19조 8,141억 원에서 2024년 21조 2,321억 원으로 1조 4,18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6) 타인자본과 자기자본 구성의 안정성 지표로 사용되는 부채비율은 부채 총액을 자기자본액으로 나눈 수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200% 이하이면 양호하다고 평가함

[표 3] 한국석유공사의 5개년(2020~2024년) 중장기 재무전망

(단위: 억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산	192,857	195,924	174,926	178,767	185,915
부채	198,141	208,106	199,562	205,399	212,321
자본	-5,284	-12,182	-24,636	-26,632	-26,406
당기순이익	-12,710	-7,561	-13,256	-4,310	-844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출자금 감액손실 미인식

그런데 위 "가항"과 같이 한국석유공사의 2019회계연도 재무실적을 고려할 때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출자금의 회수가능액이 기존 출자가액인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2019회계연도 재정상태표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출자금의 회수가능액을 분석하여 손상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대로 계상하였다.

더욱이 위 "나항"과 같이 한국석유공사의 2020~2024년의 중장기 재무전망을 고려할 때 2020회계연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예상되므로 향후 국가결산 시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출자금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완전자본잠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출자금의 감액손실을 재정순원가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시 한국석유공사는 부분자본잠식 상태로 감액손실의 인식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 28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어서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앞으로 한국석유공사 출자금의 감액손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출자금의 회수가능액 평가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